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12. 21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12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7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(1998. 12. 24) 상정, 질의 답변

○ 제6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1999. 1. 21) 토론

○ 제6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1999. 1. 25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김성호)

가. 제안이유

○ 하수도법 개정(97. 3. 7) 및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하수도법 규정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현행 조례상 구청장을 시장으로 개정

○ 공공하수도는 신고 후 사용을 개시하므로 일시사용 및 점유도 현행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

○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사용업종 세분화

○ 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규정

○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납부 후 면제 조항 신설

○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항 신설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부천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은?	○ 하수도 처리비용의 톤당 단가는 302.01원으로 현행 톤당 단가 78원에 비하여 287%의 인상요 인이 발생하고 있음
○ 1세대 5인가족 기준 요금은?	○ 현행 톤당 78원에서 9.5% 인상한 85.41원으로 인상하는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- “별첨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 94 호
의결년월일	99. 1. 26 (제68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1. 25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회

□ 수정이유

- 현시기는 IMF지원 경제위기에 처하여 온 시민이 전례없이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나
부천시에서는 하수도사업의 적자를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
-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이
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를 조례 공포한 날에서 1999년 7월로 연기하고자 부칙을 일부 개정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하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부칙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	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.